

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검토보고

행정기획위원회(환경과)

의안번호	제 35 호
제 출 자	성북구청장 (2022. 09. 20.)
의 안 명	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검 토	전문위원 정 진 만

1. 제안이유

2021년도 기후변화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로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설치 개요

- 1) 설치연도 : 2013년
 - 2) 설치근거 :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제26조
 - 3) 설치목적 : 성북구 기후변화대응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
- ※ 재원조성 : 성북나눔발전소 운용수입, 일반회계 전입금, 보조금 등
- 4) 사업내용
 -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증진사업
 - 신·재생에너지의 개발·이용·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
 - 고효율에너지인증기자재 설치 지원사업

나. 2022년도 기금사업 주요 변경개요

- 1) 기금변경 사유

○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(사업비 잔액정산)

-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보조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
- 지역지원사업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

2) 2022년도 기금변경 내역

○ 2021년도 기금 정산 내역

(단위 : 천원)

’ 20년도말 조성액㉔	’ 21년도 증감액			’ 21년도말 조성액 (㉔=㉔+㉔)
	계 ㉔=㉔-㉔	조성액㉔	사용액㉔	
49,925	40,680	118,907	78,227	90,605

○ 2022년도 기금변경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기정예산	변경예산	증
기금 총 운용액	135,240	166,355	31,115

- 2021년 기정예산 135,240천원에서 166,355천원으로 증액 편성
- 당초 예치금 59,490천원에서 90,605천원으로 증액 편성

3) 수입 및 지출 계획 변경(안)

○ 수입계획 변경

(단위 : 천원)

항 목	기정예산(A)	변경예산(B)	증감액(B-A)	증감내용
계	135,240	166,355	31,115	
전 입 금	56,350	56,350	-	
예치금회수	59,490	90,605	31,115	2021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증가
이자수입	700	700	-	
기타수입	18,700	18,700	-	

○ 지출계획 변경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-편성목	기정예산(A)	변경예산(B)	증감액(B-A)	증감내용
계	135,240	166,355		
비용자성사업비	56,490	56,490		
예치금	78,750	109,865	31,115	2021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

4) 2022년도 기금 조성(안)

(단위 : 천원)

조성액	사용액	2022년말 조성액 (잔액)
166,355	56,490	109,865
전입금 56,350 예치금회수 90,605 이자수입 700 기타수입 18,700	비용자성사업비 56,490	2023년도 이월(예치금)

3. 관련근거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 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-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4. 검토의견

-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1년도 기후변화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로,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한 것으로,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제2항¹⁾ 단서조항에 따르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 기정예산 1억3,524만원보다 23.01%인 3,111만원이 증액된 1억6,635만원으로 변경되어,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.
- 성북구 기후변화기금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제26조²⁾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기금의 재원은 성북나눔발전소 운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2)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

제26조(기후변화기금) ① 구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대응 시책 추진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변화기금(이하 이 조에서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 (개정 2020.12.31.)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구가 신·재생에너지를 판매한 대금
2. 일반회계 전입금 (개정 2020.12.31.)

용수입, 일반회계 전입금, 보조금 등이며,
기금의 용도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증진사업, 신·재생에너지의 개발·이용·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, 고효율 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설치 지원, 민간단체 등의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등임.

-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에 따라 3,111만원의 추가 수입 및 지출이 발생하여, 2022년도 기금을 기정예산 1억3,524만원에서 1억6,635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3.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(개정 2020.12.31.)

4. 그 밖의 잡수입 등

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구민, 사업자, 민간단체 또는 전문기관이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행하는 시설의 설치·운영, 조사·연구 또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, 기술, 재정 등을 위한 지원
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서 규정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증진사업

3. 신·재생에너지의 개발·이용·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

4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22조에 따른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설치 지원 (개정 2020.12.31.)

5. 민간단체 등의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

[본조신설 2013.9.26]